

각국의 안전관계 법령집

태 국

박 창 복

〈위험관리정보센터 차장〉

1. 태국의 법체계

가. 법체계의 개관

(1) 법체계의 특징

태국에 외국기업이 진출하여 법령 규칙면에서 위험을 고려할 때, 곤란한 점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법 정비가 불충분하여 체계적이지 못하다.

나) 법조문과 달리 행정지도가 행해지는 것이 있다.

다) 영국법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과 같은 애매한 규정이 많다.

라) 법률은 태국어로 되어 있고, 영역은 민간기관이 번역하여 불비한 점이 많다.

마) 대규모의 사고, 재해 등의 발생에 따라 갑자기 규제가 엄격해지는 것이 있다.

더구나 법령규칙은 서력(西歷)이 아닌 불력(佛歷: 약칭 B.E)으로 표시되어 있다. 불력은 서력년에 543년을 더한 것이다. 서력 1991년은 불력 2534년에 해당한다.

(2) 제정법

태국에는 다음과 같은 제정법이 있다.

가) 헌법

헌법은 근본법이고,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법률은 시행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1991년 2월말의 쿠데타에 의해 '78년 헌법은 폐지되고,

'91년 3월 1일에 33조로 이루어진 잠정헌법이 공포되었다. '91년 중에 신헌법이 정해졌으나, 내각, 국회 등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개정된 것은 없다고 사료된다.

'32년의 입헌군주혁명 이후, 태국에서는 쿠데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쿠데타 세력이 종래의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32년부터 지금까지 14번의 헌법이 제정되었다(잠정헌법을 포함). 그러나 이들 헌법의 큰 차이는 국회의 구성, 권한 및 국회와 내각의 관계에만 머물고 있다.

나) 왕실전범(王室典範)

왕위 계승에 관한 근본법이다.

다) 칙명

칙명은 법률과 동등한 것으로, 비상사태시 내각이 제안하여 국회가 가결한 경우에 국왕은 칙명을 공포할 수 있다. '78년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과거의 몇몇 헌법에서는 칙명이 규정되어 있다.

라) 법전

법전은 체계적으로 편별조직(編別組織)된 성립법규(成立法規)이다.

마) 법률

입법부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다.

바) 행정부에 의한 입법

① 긴급칙령

② 국가혁명평의회 포고

군사 쿠데타 세력이 헌법을 폐지하고 다음의 헌법을 제정하기까지의 기간(혁명기)에 쿠데타 세력의 장이 제정하는 입법이다. 포고에 의한 입법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고, 혁명기 완료 후도 유효하다.

③ 왕실 정령

④ 성령

성령은 법률, 긴급칙령을 근거로 하여 상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⑤ 내무성 통달

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 중에서 방콕도 내에서의 도조례는 타도에 비하여 규정사항이 많다.

지방자치체에 의한 입법으로서 다음의 6가지가 있다.

① 방콕도 조례

② 파타야 특별시 조례

③ 현 조례

④ 시 조례

⑤ 공공위생 조례

⑥ 촌 조례

아) 규칙

① 각국의 통달

② 총리부 통달

③ 공무원 내무규칙

나. 진출까지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1) 기업, 공장 설립에 필요한 Process

외국 자본이 태국에 진출할 때, 최초로 투자신청서(Application for Promotion)를 제출한다. 제출처는 대상 투자액이 2,000만บาท 이하의 경우, 투자위원회사무국(OBOI : 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 2,000만บาท~1억บาท의 경우는 투자위원회 상급 Sub-committee(Executive Sub-committee of the Board of Investment), 1억บาท 이상의 경우는 투자위원회(the Board of Investment)이다.

신청에 관련된 투자위원회의 검토 결과로써 권장통지서(Letter of Notices)가 통지된다. 신청자는 권장통지서를 수취하고부터 1개월 이내에 권장통지서 내용의 확인, 변경, 추가신청 등을 기술하여 회신할 필요가 있다. 권장통지서에 규정된 내용 및 그 이후의 변경, 수정 등에 대한 신청 심의 결과, 투자권장증서(Investment Promotion Certificate)가 투자위원회에서 교부된다.

회사 설립등기는 권장통지서의 회신에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며, 권장통지서에 인가된 규모, 형태에 따라야 한다.

공장 건설은 투자권장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더구나 공장 건설, 확장, 공장 조업을 위한 수속 등은 투자위원회사무국의 투자서비스센터에서 행한다.

(2) 투자위원회(BOI : the Board of Investment)

투자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국가, 국민의 이익이 되는 투자를 추진하는 정부기관이다. '77년 투자권장법에 따라서 태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에 대하여 투자인센티브를 공여한다. 다음에 열거한 기준에 합당한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면세, 보호조치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제품수출을 통하여 태국의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것.
- 국내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것.
- 고용 증대에 기여하는 것.
- 방콕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것.
- 에너지 절약, 수입에너지 대체산업
-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 정부가 요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주된 조회처

- 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
Thai Farmers Bank Building
400 Phaholyothin Road
TEL 270-1400

- 주한 태국대사관 상무관실
서울시 중구 한남동 738-20
TEL 795-4446

다. 안전방재에 관한 법령 규칙의 개관

화재·폭발에 관한 규정은 건축기준법, 소방법, 공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이들 법은 주로 건설시에 방화·방폭을 규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애매한 규정이 많으며, 일반건축물과 고층건축물에서 다른 규제가 거의 없는 등 불비한 점이 많다. 또한, 방콕도 내에서는 보다 엄한 건축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노동재해에 관해서는 혁명평의회 포고 103호 및 그것에 대한 내무성령에서 건설시 및 그 후의 작업시 쌍방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 이들은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보호구의 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의 동향은 방화, 노동환경, 작업안전 등에 관한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기존의 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초안이 작성되어 있다('91년 2월 현재). 또한 '91년 3월에 폭발물 저장고에서 700호가 전소한 대규모 화학폭발이 발생하기도 하고, 방콕도 내의 데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계기로 기존의 법령규칙이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2. 안전방재규제의 개관(방화·방폭)

가. 안전방재규제의 개요

방화·방폭규제는 다음에 나타내는 법령·규칙에 정해져 있다(별도 자료 참조). 전반적인 규제가 적고, 공장을 제외한 용도별의 규정이 거의 없는 등 애매하다. 아래의 법령·규칙에 따라 엄격한 민간기준으로서 태국손해보험협회의 규정이 있다.

① 소방법

방화검사자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다. 가연물 보유 건축물의 소화기 설치나 가연물을 사용, 저장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은 소방법 규칙에 정해져 있다.

② 건축기준법

방콕도 외는 “건축법”, 방콕도 내에서는 “건축법에 관한 방콕도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건축물의 구조, 출구, 비상계단 등 피난설비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③ 공장법

공장조업허가증 취득자에 대하여 피난설비, 소화설비의 설치 의무를 정한다. 자세한 것은 “공장조업허가증 취득자의 의무에 관한 공업성령”에 규정되어 있다.

④ 석유연료저장 관련법

석유연료 저장 등을 정한다.

⑤ 기타

노동안전위생법 “Crane 및 Derrick의 작업안전에 관한 내무성령”에서 크레인, 데릭을 사용하는 공장의 소화설비 설치가 규정되어 있다.

나. 안전방재 규제의 운용실태와 진출시의 유의점

화재·폭발에 관한 법령·규칙은 건설시의 규제가 주된 것이며, 관할관청의 검사는 건설시가 엄격하다. 이것은 건축물의 구조 등이 강인, 적절하면 화재·폭발은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 후 검사관이 인정한 후의 전적인 책임은 싸인을 한 담당 검사관이 지도록 되어 있어 공장, 상업용 빌딩에서는 작업이나 개업 후의 검사는 없다. 다만, 호텔에서는 지방관할관청 등의 안전검사가 월 1회 행해진다.

또한, 법령·규칙은 최저 기준이 아니며 행정지도로 규제가 경감되는 것도 있다. 다만, 행정지도는 명문화되지 않아 진출하는 기업이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태국의 법령·규칙은 애매한 규정이 많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NFPA나 일본 기준 등을 준용하는 것이 검사관에게 인정되는 전례가 많다.

검사 및 행정지도를 행하는 관할관청은 다음과 같다.

(a) 공공사업국(Department of Public Works)

법령·규칙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타입, 건축계획의 검토를 한다. 당국은 건축인가 전에 건축계획

에 따르고 있는가의 검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원의 부족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b) 소방서(Police Fire Brigade)

소방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검사한다. 인가 등 행정지도의 권한은 없다.

(c) 방콕도청(Bangkok Matropolitan Administration : BMA)

방콕도 조례에 의한 건축계획을 검토한다. 계획의 불비한 점,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직원은 변경 요청을 한다. 이에 따라서 변경조치가 행해지는 경우, 해당계획은 허가된다.

방콕도청이 행하는 검사는 다음의 3가지이다.

- ① 건축허가 전에 건축계획이 도조례에 적절한가
- ② 건축물 사용 인가 전에 계획대로 건설되었는가
- ③ 용도변경시 도조례에 따르고 있는가

(d) 공업노동국(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공장조업 허가 전에 계획을 따르고 있는가를 검사한다. 조업중의 공장이 사람 또는 재물에 대하여 불쾌한 사태 혹은 위험을 미치는 경우, 공장노동국장은 해당 공장에 문서로 지시를 내릴 권한을 갖고 있다.

(e) 공장관리국(Factory Control Division)

자본금 1억바(한화 34억원) 이상의 공장 설립 허가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독물국, 공장환경국, 공장안전국 등 다른 기관과 관련된 경우, 해당 기관과 심의한다.

검사는 인가 전에 정부의 정책에 적절한가 어떤가, 입지 및 건축물이 적절한가를 실시한다.

다. 안전방재상 필요한 설비와 근거 법령·규칙

1) 공장

공장에서의 방화·방폭규정은 공장법, 공장조업 허가 취득자의 의무에 관한 공업성령, 건축법, 소방법규칙에 정해져 있다(별도 표 2.3.1 참조).

(a) 피난설비

비상구, 피난로, 출구, 비상계단, 베란다, 발코니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b) 화재감지, 경보장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공장의 종류, 비상경보장치의 수, 전원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c) 소화설비

가연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공장, 크레인, 데릭을 사용하는 공장에 소화기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다.

(d) 위험물 등

가연물의 사용 및 저장의 규정은 소방법 규칙에 정해져 있다.

(e) 건축물의 구조

건축자재, open space, 이격거리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 개축시에는 엔지니어 직업법(Act on the Engineering Profession in '65)에서 규정된 전문 엔지니어 및 건축사직업법(Act on the Profession of Architecture in '65)에서 정한 전문건축사의 인가가 필요하다.

2) 상업시설(호텔, 데파트 등)

태국에는 용도별 규정이 거의 없으며, 안전방재상 필요한 설비는 상업시설에 한하지 않고 모든 건물에 요청되는 규정이다.

(a) 피난설비

출구, 비상계단, 베란다, 발코니, 표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b) 건축물의 구조

건축자재, open space, 이격거리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참고 : 본 내용 중의 원문 참조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협회 위험관리정보센터(T : 780-4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